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권고 근거 마련 》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82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1928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장 권고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5항)	2

I. 업무영의원 대표발의(제221928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업무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16.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3. 검토의견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장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제5항)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내진성능의 보장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내진성능의 보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④ (생략)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u>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u> 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 <u>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u> ----- ----- ----- ----- <u>. 다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정밀안전진단’¹⁾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함.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²⁾를 살펴보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관리주체³⁾의 제1종시설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적⁴⁾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항),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제2항),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제3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⁵⁾에 따른 내진설계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⁶⁾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지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의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8조7)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8)에 기술수준 향상 및 부실진단 방지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은 현행법 시행령 제14조9)에서 ①정밀안전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민간 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대하여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및 내진보강¹⁰⁾ 권고 현황 】

(단위: 건)

구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내진보강 권고
2021년	1,361	630	240
2022년	1,186	580	221
2023년	1,280	551	136
2024년	1,290	264	64
2025년	1,461	297	77
2026년 (6월까지)	5,02	132	26
합 계	7,080	2,454	764

※자료: 국토교통부

*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재평가 및 재심의 건 포함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평가 대상 중 내진성능평가가 포함 건수

이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의 보강을 권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칠 수 없어 내진성능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내진성능 보강 권고를 ①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강 권고(안 제12조제5항 본문)와 ②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른 보강 권고(안 제12조제5항 단서, 현행 제12조제5항에서 이동)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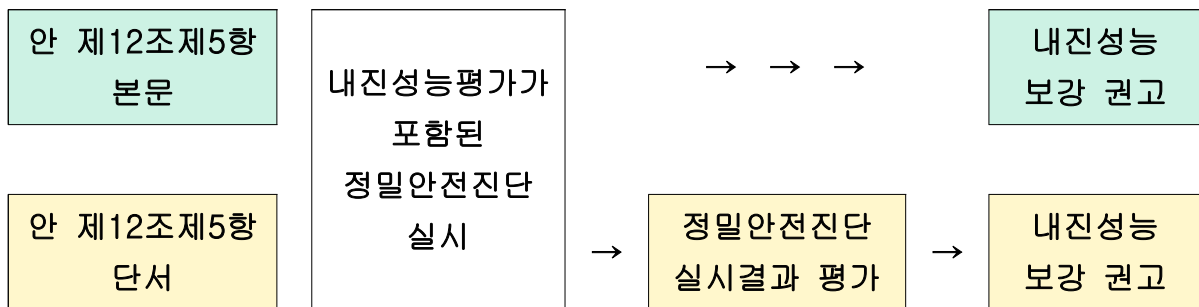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대상 여부 또는 평가 여부와 관계 없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만으로도 내진성능의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진보강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권고 요건 비교 】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②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른 보강 권고(안 제12조제5항 단서, 현행 제12조제5항에서 이동)는 기본적으로 ①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강 권고(안 제12조제5항 본문)에 포함되는 개념에 해당하고,

【 개정안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권고 구분】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전이나 평가를 생략한 상태에서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제5항 단서는 신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내진성능의 적기 확보와 관리주체의 경각심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2조제5항 본문과 같이 개정하는 경우 단서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